##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항 :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2023. 1. 27.

##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 내	기재 정정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 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 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2 년)이 <u>되는</u>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 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 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2 년)이 <u>경과</u> 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 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 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 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 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 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 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 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del>운용</del> 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2.12.31. 기준	
투자자유의사항	기재 정정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 인 경우 소규모펀드 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 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 산투자가 어려워 효 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 자산운용이 곤란하고 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의해지 될 수 있으나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 시 소규모펀드 여부	효율적인 거나 임 니, 투자
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 자산운용이 곤란하기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의해지 될 수 있으나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 시 소규모펀드 여부	- · - 거나 임 기, 투자
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의해지 될 수 있으나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 시 소규모펀드 여부	니, 투자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 시 소규모펀드 여부	.,
	르 화이
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 하시기 바라며 소규	2 76
	7모펀드
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 해당여부는 금융투	사협회,
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 판매회사, 자산운용	사 홈페
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2.12.31.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5.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2.12.31. 기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최근 3년 경과 내역 삭 채권 책임운용역 : 문성호 〈삭 제〉	
변경 내역 제 (2015.02.22~2020.01.0	
8)	
채권 부책임운용역 : 진재 (삭 제)	
<u>4</u>	
(2017.07.28~2020.01.0	
8)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채권]	
부책임 <del>운용</del> 역 : 전 <del>춘봉</del>	
<u>  1 7 8 6 9 7 9 6 6 9 9 9 9 9 9 9 9 9 9 9 9 9 9</u>	
<u> </u>	
(2017.07.28~2018.02.2 <b>〈삭 제〉</b>	장기성
(2017.07.28~2018.02.2 <u>8)</u> (삭 제)	
(2017.07.28~2018.02.2   (삭제)   (2017.07.28~2018.02.2   (삭제)   (원제)   (Đ제)   (Đ제)	[주식]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부가 대상]				
투자 대상] 불가파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과일부터 3 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직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라고 무자한도에 직합한 것으로 본 6개월까지(선 사행권 제공 항제 3 항제 3 호의 경우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직합한 것으로 본 6개월까지(선 사행권 제공 항제 3 항제 3 호의 경우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직합한 것으로 본 6개월까지(선 사행권 제공 항제 3 항제 3 호의 경우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직합한 것으로 본 6개월까지(선 사행권 제공 항제 3 항제 3 호의 경우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직합한 것으로 본 6개월까지선 사항원 제공 항제 3 항제 3 호의 경우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직합한 것으로 본 6개월까지선 사항원 기정사항 반영 경우중권모두자신탁(수네 2) 동일종목투자 : 소백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연 대로 구탁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연 대로 구탁대당채권유동화의 연 기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무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내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취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무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봄 인 가능한 시기까지를 하며, 결혼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까지(앱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봄 인 ~ ⑤ (생 략) 연 등자생인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봄 인 ~ ⑥ (현행과 같음) 구의 집합투자기 원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봄 인 ~ ⑤ (현행과 같음) 구 트리스토 아시아 장기성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시) 2) 동일종목투자 : 〈삭 제〉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시) 2) 동일종목투자 : 〈삭 제〉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시) 2) 동일종목투자 : 〈삭 제〉 전략자상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는 조과일부터 3 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무자한도에 점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무자한도에 점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무자한도에 점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무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무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무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하고 함께, 경험한 가으로 본 이 구 등리스톤 아시아 경기성 경주응권모투자신탁(구식) 나, 투자계한 [이 투자산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무자시한 무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무자시한에 전기성 주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이 따른 주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이 따른 주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기상 기상 함께 대로 구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기상 기상 함께 대로 구택자당개권유통화회사법 기상	투자 대상]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보고 함께 의한 집합투자개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함제 3 함께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급용투자법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함제 3 함께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이 ~ ⑤ (생략) 이 ~ ⑥ (현황과 같음) 이 ~ ⑥ (한황과 같음) 이 ~ ⑥ (한화과 같음) 이 ~ ⑥ (한화 건 연화과 감음) 이 ~ ⑥ (한화과 건 연화과 감음) 이 ~ ⑥ (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무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의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경우에는 조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 위원 기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 위원 기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 기가지로 하며, 금융투자 대상 기가 다음에 취당하는 사유 로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 대상 기가지로 하며, 금융투자 임구상 기가지로 하며, 금융투자 임구상 기가지로 하며, 금융투자 임구상 제상 기가지로 하며, 금융투자 임구상 제상 기가지로 하며, 금융투자 임구상 제상 제상 제상 제상 기가지로 하며, 금융투자 임구상 제상			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지 기능한 시기까지)는 그 이 가능한 시기까지 <u>로</u> 하며, 등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본 기가하고 함께, 무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본 1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가 구의 집합투자자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0 ~ ⑤ (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개정사항 반영 구름건으로 아시아 장기성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등관로부자 : 수택저당재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원자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원자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원자권유통화회사법 수택자원자권유통화회사법 연합 교육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검합한 것으로 본 입규정 제4-54조2 규정에 검합한 것으로 본 입규정 제4-54조2 규정에 검합한 것으로 본 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부자한도에 적한한 것으로 본 경험하지 에스트스 경험한 것으로 본 기술에 의한 집합투자개선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정 제용 제공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이 ~ ⑤ (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경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경우에는 무자시합의 주요 무자시합의 구형 기술 기상 기상 구택자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연 때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수 제공 불가피하게 위의 임기 기상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임기 기상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임기 기상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임기 기상한 경우에는 출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가상에 기상되고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기상되고 함께,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기상되고 함께 기상으로 기상되고 함께 기상으로 기상되고 함께 기상되고 가상되고 함께 기상되고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었다고 함께 기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기상되고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기상되고 함께 기상되고 하며, 급용투자 업구에 기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상되고 가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본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이 가능한 시기까지 <u>로 <b>하며</b>,</u>
대상 다른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조과하는 경우에는 조가한도를 조과하는 경우에는 조가인 함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및 기상이 함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조과하는 경우에는 조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본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보다 기상자로 하며, 금융투자 업 건가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보다 기상자신로 구시한다는 무지 기상자인 하당하는 사유로 보기되어 되었다. 기상자신로 구시한다는 조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전한 것으로 본 건강에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되어 건강하지 기상되는 전략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건강에 제4-54조2 규정에 기상하면 기상되는 집로 제 제4-54조2 규정에 기상하면 기상되는 집로 제 제4-54조2 규정에 기상하면 기상하다. 기상자신로 그 기상에 기상되는 기가지기로 하며, 금융투자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기상되는 기관 제 제4-54조2 규정에 기상되는 기관 제 제4-54조2 규정에 기상하면 기상하면 기상하면 기상하면 기상하면 기상하면 기상하면 기상하면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 도에 격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생 략)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기정하는 모른자신탁[주시] 2) 동일종목투자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구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기상 대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기상 대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기상			봄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
지 교 기 교 기 교 기 교 기 교 기 교 기 교 기 교 기 교 기 교				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1				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지 수 (생 략) 전에 적합한 것으로 봄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1) ~ (⑤) (생략)         (1) ~ (⑥) (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가정사항 반영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동일종목투자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어때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이 따른 주택제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연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삼 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2 청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제 44-54조2 규정에				<u>이를 따른다)</u> )는 그 투자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혼자의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신은 그 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강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동일종목투자 : (삭 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불가능한 투자대상자신은 그 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점합한 것으로 봄  집 대정 제 4-54조2 규정에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나. 투자세한       2) 동일종목투자 :       2) 동일종목투자 :       (삼 제)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무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당하는 사유로 불가미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는 그투자한도에 작한 것으로 봄에 감해되었다면 보다를 하면, 금융투자업체적 제4-54조2 규정에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자 <del>본</del> 시장법 및 시행령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대상	개정사항 반영	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대응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서기까지 로 하며, 금융투자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투자:	2) 동일종목투자 :
투자세한]  대문 주택저당채권유동  환화사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지합한 것으로 봄  (삭 제)  (사 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지기하지로 하며, 금융투자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u>〈삭 제〉</u>
학회사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투자제한]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	<u>〈삭 제〉</u>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불가능한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는 그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열규정 제4-54조2 규정에			<u>화회사</u>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불가능한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는 그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열규정 제4-54조2 규정에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격합한 것으로 봄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전합한 것으로 봄  합.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시기까지 로하며, 금융투자 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투자비 <del>율을</del> 적용하지 아니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로 불가피하게 위의 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함.	함.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접급정 제4-54조2 규정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로 불가피하게 위의	로 불가피하게 위의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2),3),4),5)의 투자한도를	2),3),4),5)의 투자한도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시기까지 <u>로 하며, 금융투자</u> 적합한 것으로 봄 <b>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b>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적합한 것으로 봄 <b>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b>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시기까지 <u>로 <b>하며, 금융투자</b></u>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적합한 것으로 봄	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
			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
			<u>다)</u>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봄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2. 11 월말 기준
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			
 13. 보수 및 수수료에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	2022.11.30. 기준
관한 사항	기준으로 기재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아래 첨부 참조	아래 첨부 참조
과세에 관한 사항		<u></u>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2.12.31. 기준
사항			
가. 회사 개요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최근 기준으로 기재	_	2022. 12. 31 기준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u> </u> 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2)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에 관한 사항	개정사항 반영		(2)   (1)   (2)   (1)   (2)   (1)   (2)
나. 수시공시	10.10 20		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1. 1. 10.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
			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
			첫 - 현대되자 - 합되고 현다   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의 결정 및 그 사유	의 결정 및 그 사유 <b>(법 제</b>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
		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
		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
		<u>함한다)</u>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 별 첨[연금서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공제제도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3 II II—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 단, 이연퇴직소 <del>득은</del> 3.3%(7	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2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 <del>득</del> 세 16.5% (지방소득	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 <del>득은</del>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	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sup>※</sup>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6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2%
(1,4기간 소위)	(700	/ L	

※지방소득세 별도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b>4.5천만원 이하</b>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u>(900만원)</u>	12%

※지방소득세 별도

〈삭 제〉

〈신 설〉※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